

##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년 12월 20일

옥 천 군



### 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
### 2. 제정이유

- 농촌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

### 3. 주요골자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 및 금액(안 제3조~5조)
- 지원절차(안 제6조)
- 교복구입비 환수(안 제8조)

#### 4. 의견제출

-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평생학습원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TEL : (043)730-3602, FAX : (043)731-2692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#### 5. 붙임

-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##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 및 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, 제20조에 따라 농어촌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옥천군 학생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복구입비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옥천군에 있는 학교와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1항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제5조(지원금액 및 횟수)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

가 정한다.

② 동일인에 대하여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만 지원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

③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·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복구입비 지급)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,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,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

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.



(뒷면)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확인하는 것을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 (해당 박스에 √표시)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개인정보 수집·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: 옥천군청, 학교 등
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: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
3.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- 학 생: 성명, 생년월일, 학교, 주소(전입일자 포함)
  - 신청인: 성명, 연락처, 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 (해당 박스에 √표시)

※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학 생 : (서명 또는 인)

보호자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관 계 : 지원 대상 학생의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옥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건